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70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한민수 • 박 정 • 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·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「행정기본법」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,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'재심사', '재검사', '재심'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, 합리적인 사유 없이 「행정기본법」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 · 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, 처리기간 · 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

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

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「행정기본법」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11조의2).

법률 제 호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2항 중 "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"를 "범위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에"를 "제9항에"로 한다.
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받거나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통지하는 참여제한, 환수조치 및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국가연구개발사업의	제11조의2(국가연구개발사업의
참여제한 등) ① (생 략)	참여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의	②
평가기준, 평가절차, 연구개발	
의 참여제한 기간, 사업비 환수	
의 기준과 <u>범위 및 이의신청</u>	범위
절차,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	
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	
통령령으로 정한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
	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평가 결
	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
	통지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<u>⑥</u>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참
	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
	과 사실 등을 통지받거나 연구
	개발의 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
	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
	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
	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
	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

<u><신 설></u>

- <u>⑤</u> (생 략)
-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및 <u>제5항에</u>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 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
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
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u>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</u>
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
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
따른다.
<u>⑨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<u></u>
제9항에